

##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은 귀하와 2021년 6월 30일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목적물 : \*\*\*\*\*

임차보증금 : 금 3,000,000원

월 임대료 : 금 460,000원(매월 1일 선불 지급 조건)

임대차기간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100,000원을 2021년 6월 30일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2,900,000원은 같은 해 7월 1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약 4개월째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2021년 8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현재까지 3개월째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수차례 직접 또는 부동산을 통하여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1) 2021년 8월 9일 본인이 귀하에게 지급 요청 문자 발송

: 아무 회신이 없었으나, 뭔가 일시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조금 기다려 보기로 함.

2) 2021년 10월 5일 본인이 계약 당시 부동산(아크로퍼스트 부동산)에 상황 확인을 요청함.

: 부동산이 귀하와 통화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송금한다고 했다고 하여, 기다려 보기로 함.

3) 2021년 10월 7일 귀하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

: 현재 동생이 살고 있어서 밀리고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2021년 10월 12일에 송금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해당일에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음.

4) 2021년 10월 15일 본인이 귀하에게 재차 지급 요청 문자 발송

: 현재까지 귀하로부터 아무 회신이 없는 상태임.

5) 2021년 10월 22일 본인이 부동산에 재차 상황 확인 요청

: 부동산에서도 귀하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며, 문자를 남겼다고 함. 관리실에 확인해 보니 관리비도 밀린 상태라고 함.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내 건물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8.